

2024 인천주안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신 · 구대조표

(개정 전) 2023학년도		(개정안) 2024학년도
단어 변경	학년협의회 교과 담임교사	학년(군)협의회 교과(목) 학급 담임교사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 교육부훈령 제433호를 준거로 하여 인천광역 시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적용 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		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 법 시행규칙」 교육부령 제318호, 「학교생활기 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 교육부훈령 제477호를 준거로 하여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 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.
제2조 (기본 방침)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·공정성·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년 (군)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 영한다.		제2조 (기본 방침) ①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·공 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 교별 학년(군)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 회를 구성·운영한다.
② 평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, 교육청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·학습의 질을 개선하 는데 주안점을 둔다.		② 평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, 교육청 학업성 적관리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·학습의 질을 개선하 는데 주안점을 둔다.
⑥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 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아 니하고,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선행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.		⑥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나지 아니하고,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를 실시한다. .

(개정 전) 2023학년도	(개정안) 2024학년도
⑧ 학교장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, 부정행위 발생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.	삭제
	⑧ 신설 학생이 전출·면제·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고,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. 가. 인적사항 나. 학적사항 다. 출결상황 라.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마. 교과학습 발달상황 바.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사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아.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제3조 (설치)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,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 및 관리,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 다만, 학교의 여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.	제3조 (설치)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,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·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학교의 여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.
제5조 (심의 내용) ② 각 학년협의회에서 제출된 <학년평가 기본 계획>	제5조 (심의 내용) ② 각 학년(군)협의회에서 제출된 <학년(군)평가 기본계획> 가. 교과학습 평가 계획 나.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
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	삭제

(개정 전) 2023학년도	(개정안) 2024학년도
제6조 (운영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.	제6조 (운영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1/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.
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	제 3 장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
제7조 (평가의 목표·기준·내용 및 방법) ⑥ 교과학습발달상황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·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. ※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,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한다.	제7조 (평가의 목표·기준·내용 및 방법) ⑦ 교과학습발달상황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은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·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. ※ 이하 내용 삭제
⑦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	⑥ 향으로 이동
	⑧ 신설 교과학습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.
1) 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, 이때 영역은 ‘교육과정의 영역, 핵심개념, 기능 등’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.	2) 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, 이때 영역은 ‘교육과정의 영역, 핵심개념, 기능 등’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. 정보공시 관련, 교과(목)별 평가 영역 누락 여부를 유의한다.

(개정 전) 2023학년도	(개정안) 2024학년도
3)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·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,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(동료평가서, 자기평가서, 수업산출물(수행평가 결과물 포함), 소감문, 독후감)는 활용할 수 있다.	삭제
제8조 (평가의 활용 및 결과 처리) ① 평가는 ② 학생의 평가 결과는 ④ 학생의 평가 결과물	제8조 (평가의 활용 및 결과 처리) ① 교과학습 평가는 ②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④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물
제 4 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	제 4 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
① ~ ⑬	전면개정 ① 각 학년(군)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<학년(군)평가 기본계획>을 수립한다.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.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.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.

(개정 전) 2023학년도	(개정안) 2024학년도
제 5 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① ~ ⑬	제 5 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전면개정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. ②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1항에 따른 가해학생 관련 기록과 관리의 동법 제16조의2(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)와 교육부훈령 제433호, 제477호를 따른다.
제 6 장 기타 사항	제 6 장 기타 사항 신설 ② 학교생활기록부 「교과학습발달상황」의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, 「창의적 체험활동상황」의 ‘특기사항’, 「행동특성 및 종합의견」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.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.
②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, 면제,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, 이 학생의 재취학, 전입학 등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	③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, 면제,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, 이 학생의 재취학, 전입학 등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③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‘귀국학생 등’은 국내 학교에 취학, 재취학,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성취도를 산출한다. 다만, 재취학,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재취학,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.	④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‘귀국학생 등’은 국내 학교에 취학, 재취학, 편입학한 후 취득한 평가 결과 처리는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따른다.

(개정 전) 2023학년도	(개정안) 2024학년도
⑥ 학업성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민원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 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.	삭제
⑦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제5조제7항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.	⑦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제5조제6항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.
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[교육부훈령 제433호, 2023.2.10., 일부개정]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.	제2조 (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[교육부훈령 제477호, 2024.3.1., 일부개정 2024.2.8.]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.